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14호 2022. 6. 13.(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924호(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928호(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 3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42호(도로명주소부여고시문) 5

회							
람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4. 22.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56-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수용토지의 표시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연수구 청학동 산7-1번지	홍○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사유 : 주소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6. 13. ~ 6. 28.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4. 22.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사 업 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수용토지의 표시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연수구 선학동 산65-9	김○남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000	공시송달 대상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000	

6. 공시송달 사유 : 주소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6. 13. ~ 6. 28.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6.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7.09	옥련동을 위치성을 고려한 도로명 부여	옥련동 20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6.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9.03.15	인천타워대로 시작점에서 2310m 떨어진 왼쪽 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1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31번길 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6.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2.05.22	인천신항으로 향하는 도로	송도동 590-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